

< 연말정산 공지 >

1.자료제출대상

①연간 급여 총액 1,400만원 이상(타근무지포함)중소득세 발생한 근로자

2025년 급여합산 개월 12개월 확인 > 개월수 미달자는 중도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

* 중도입사자는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첨부하여 합산신고

* 중도퇴사자는 개별 진행

②미제출자 & 연간급여 1,400만원이하 : 본인공제+ 4대보험 적용하여 연말정산 임의 진행함.

③25.12.31일기준 계속근로자만 연말정산 대상임.

2.자료제출기한(기한영수)

*** 26년1월21일~ 1월28일(수요일) 까지 ***

* 합산소득 및 누락시 근로자 개별신고(홈텍스 또는 세무서(26년 5월))

3.자료제출 업로드

연간 총 급여총액 1,400만원(타근무지포함) 미만자 자료제출제외

①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

:주민등록등본1부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필수 제출

단,부양가족,배우자,장애인공제시 해당이름 동그라미 표기0

“필수”표기없는경우 반영되지 않음!!!!

[주의]부양가족, 배우자의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이상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500만원이상)의 경우제외!!!
(연금소득은 공단문의)

②연말정산간소화

: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필수 제출(스캔X, 복사X, 사진X 제출시 미반영될 수 있음)

홈텍스 > 연말정산 > 연말정산간소화 >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
국세청 홈텍스 자료 조회"한번에 내려받기"한 자료(비변설정X,신고서X)

단,*중도입사자*는매월로 나오게조회해서출력

ex) 1월,2월 종전근무, 6월 입사자는 1월,2월,6월~12월까지 자료만 적용해야함

- 소득·세액공제 자료조회> 귀속년도 2025년> 전체월선택 해제> 근무기간 해당월 체크> 한번에 내려받기

(파일첨부_소득·세액공제 자료조회(근무월선택)참고)

○부양가족이 소득·세액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,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가능함.

○부양가족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및 앱으로 신청가능.

(파일첨부_부양가족자료제공 신청방법 참고)

③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:종전 근무지 또는 두곳이상 근무지가 있는 경우 합산신고해야 합니다.

○25년도 중도 신규입사 직원:전 근무지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”필수 (원천징수부X,갑근세확인원X,급여명세서X 등)

○25년도12/31일 기준 두곳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: 한곳에서 합산신고가 진행되야 하므로 우리기관에 타기관자료를 제출하거나 우리기관 자료를 타기관에 제출

(타기관 제출 서류 요청은 우리기관 12월 급여신고 완료후 가능)

④기부금

:종교단체,기타기부금 등(기부금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만 공제가능)